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0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나릿재마을 5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14.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처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thehu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동점인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시 수성구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3605호(2017.12.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1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45층, 12개동 6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 아파트 1,043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143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330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3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공용	세대별 공급면적 소계	그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이전기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당해	다자녀가구 기타	신혼부부 당해	신혼부부 기타	노부모부양 당해	노부모부양 기타	특별공급 계	일반공급	해당동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민영주택	2017001779-01	84.7990A	84A 84A1	84.7990	34.2372	119.0362	5.3346	58.5779	182.9487	39.9604	142	71	15	7	7	7	7	2	2	118	24	501동,502동,503동,504동	–	2021년 8월
	2017001779-02	84.7818B	84B	84.7818	34.2638	119.0456	5.3335	58.5660	182.9451	39.9523	133	66	13	7	7	7	7	2	2	111	22		2	
	2017001779-03	84.8075C	84C	84.8075	33.3332	118.1407	5.3352	58.5838	182.0597	39.9644	8	4	–	–	–	–	–	–	–	4	4		–	
	2017001779-04	84.7749D	84D 84D1	84.7749	38.2667	123.0416	5.3332	58.5613	186.9361	39.9490	8	4	–	–	–	–	–	–	–	4	4		–	
	2017001779-05	84.9139E	84E	84.9139	32.8511	117.7650	5.3419	58.6573	181.7642	40.0145	34	17	4	2	2	2	2	1	1	31	3	501동	1	
	2017001779-06	99.9109A	99A	99.9109	40.5810	140.4919	6.2854	69.0170	215.7943	47.0817	282	141	–	14	14	–	–	4	4	177	105	501동,502동,503동,504동	7	
	2017001779-07	99.9703B	99B1	99.9703	40.9277	140.8980	6.2891	69.0581	216.2452	47.1097	8	4	–	–	–	–	–	–	–	4	4	506동,508동,510동,512동	–	
	2017001779-08	99.6508C	99C	99.6508	40.4751	140.1259	6.2689	68.8373	215.2321	46.9591	8	4	–	–	–	–	–	–	–	4	4		–	
	2017001779-09	99.9033E	99E	99.9033	38.1096	138.0129	6.2849	69.0118	213.3096	47.0781	20	10	–	1	1	–	–	–	–	12	8	505동,507동,509동,511동	4	
	2017001779-10	99.9696F	99F	99.9696	38.0048	137.9744	6.2891	69.0576	213.3211	47.1094	18	9	–	1	1	–	–	–	–	11	7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천원)

타입	전용면적(㎡)	동별(라인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 1회(10%) 2018.07.16	2회(10%) 2019.01.15	3회(10%) 2019.07.15	4회(10%) 2020.01.15	5회(10%) 2020.07.15	6회(10%) 2021.01.15	잔금(30%) 입주지정일
84A	84.7990	501동, 502동, 503동, 504동 (1호)	7~9	5	77,310,717	267,089,283	–	344,40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34,440,000	103,320,000
			10~19	40	77,310,717	277,689,283	–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20~29	40	77,310,717	284,789,283	–	362,100,000	36,210,000	36,210,000	36,210,000	36,210,000	36,210,000	36,210,000	36,210,000	108,630,000
			30~39	38	77,310,717	291,889,283	–	369,20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110,760,000
			40~45	15	77,310,717	302,589,283	–	379,90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113,970,000
84A1	84.7990		7,8	4	77,310,717	277,389,283	–	354,700,000	35,470,000	35,470,000	35,470,000	35,470,000	35,470,000	35,470,000	35,470,000	106,410,000
84B	84.7818	501동, 502동, 503동, 504동 (4호)	6~9	16	77,295,027	275,704,973	–	353,0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10~19	40	77,295,027	286,704,973	–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20~29	40	77,295,027	293,904,973	–	371,20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111,360,000
			30~39	33	77,295,027	301,204,973	–	378,50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113,550,000
			40~41	4	77,295,027	312,104,973	–	389,40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116,820,000
84C	84.8075	501동, 502동, 503동, 504동 (1호)	3	1	77,318,456	250,081,544	–	327,40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98,220,000
			4	3	77,318,456	253,581,544	–	330,900,000	33,090,000	33,090,000	33,090,000	33,090,000	33,090,000	33,090,000	33,090,000	99,270,000
			5	1	77,318,456	260,781,544	–	338,10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101,430,000
			6	3	77,318,456	267,881,544	–	345,200,000	34,520,000	34,520,000	34,520,000	34,520,000	34,520,000	34,520,000	34,520,000	103,560,000
84D	84.7749	501동, 502동, 503동, 504동 (4호)	36	1	77,288,739	313,911,261	–	391,20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117,360,000
			41,44	3	77,288,739	325,211,261	–	402,50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120,750,000
84D1	84.7749		34,39	2	77,288,739	341,011,261	–	418,30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125,490,000
			42	2	77,288,739	353,111,261	–	430,40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129,120,000
84E	84.9139	501동 (3호)	4	1	77,415,461	254,084,539	–	331,50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99,450,000
			5	1	77,415,461	261,284,539	–	338,70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101,610,000
			6~9	4	77,415,461	268,384,539	–	345,80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103,740,000
			10~19	10	77,415,461	279,084,539	–	356,50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106,950,000
			20~29	10	77,415,461	286,184,539	–	363,60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109,080,000
			30~37	8	77,415,461	293,284,539	–	370,70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111,210,000
99A	99.9109	501동 (2호) 502동, 503동, 504동 (2, 3호)	3	2	91,088,142	272,919,871	27,291,987	391,30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117,390,000
			4	7	91,088,142	276,738,053	27,673,805	395,50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118,650,000
			5	7	91,088,142	284,465,325	28,446,533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6~9	28	91,088,142	292,192,598	29,219,260	412,50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123,750,000
			10~19	70	91,088,142	303,828,962	30,382,896	425,30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127,590,000
			20~29	70	91,088,142	311,556,235	31,155,623	433,80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43,380,000	130,140,000
			30~39	68	91,088,142	319,283,507	31,928,351	442,30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132,690,000
			40~45	30	91,088,142	330,919,871	33,091,987	455,10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136,530,000
99B1	99.9703	506동, 508동, 510동, 512동 (1, 2호)	3	8	91,142,294	310,779,733	31,077,973	433,0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99C	99.6508		5	8	90,851,008	321,589,993	32,158,999	444,60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133,380,000
99E	99.9033	505동, 507동, 509동, 511동 (1호)	3	4	91,081,274	264,926,115	26,492,611	382,50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5	4	91,081,274	276,198,842	27,619,884	394,90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118,470,000
			6~9	8	91,081,274	283,744,296	28,374,430	403,20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120,960,000
			11~13	4	91,081,274	295,107,933	29,510,793	415,70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124,710,000
99F	99.9696		4	4	91,141,733	268,507,515	26,850,752	386,500,000	38,650,000	38,650,000	38,650,000	38,650,000	38,650,000	38,650,000	38,650,000	115,950,000
			6~9	8	91,141,733	283,598,425	28,359,842	403,10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120,930,000
			10~14	6	91,141,733	294,962,061	29,496,206	415,60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124,68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택형(㎡)	84.7990A	84.7818B	84.8075C	84.7749D	84.9139E	99.9109A	99.9703B	99.6508C	99.9033E	99.9696F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84A	84B	84C	84D	84E	99A	99B	99C	99E	99F
견본주택등 약식표기	84A, 84A1	84B	84C	84D, 84D1	84E	99A	99B1	99C	99E	99F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조망권, 일조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 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및 붙박이형 가전 등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의 위치를 지정하여 할양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동 · 호수 결정 등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청약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인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분양주택 당첨여부 및 재당첨 제한기간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계약시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시)]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계좌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고,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당첨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6~45층 규모임. • 지붕은 평지붕이며, 타워주동은 옥탑 장식 구조물이 설치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식 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탑상형 고층 타워형 주동타입과 저층 판상형 주동타입이 혼재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단지 배치도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행복도시 건설청의 심의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501~504동은 저층 5개층에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건강계단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 등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505~512동 2층은 전체 피로티 구조로 데크로 각동이 연결된 구조이며, 일부 부대시설(다목적실)이 분산 배치되어있어 입주민 등의 출입에 제한이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자는 반드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피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동 피로티의 높이는 피로티의 위치별로 상이하오니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지침 등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설치하여야 하는바, 아파트는 연료전지 설비가 지하층에 설치되며, 판매/근생시설은 태양광설비가 501동 및 503동 인근 판매/근생시설의 지붕층에 설치되며, 태양광패널에 의한 빛반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지붕층 일부에는 아파트 및 판매/근생용 냉각탑 및 실외기실이 집중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저층 세대 등인 장비의 수증기,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발전기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501~504동 및 저층주거의 일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데크브릿지, 쓰레기투입구, 재활용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채광창, 등의 설치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대지 일부(주출입구 및 차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 조경 ·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피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501~504동은 구조상 계단실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구조이며, 505~512동은 각 층마다 1개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 501~504동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 505~512동 엘리베이터 홀은 창호가 없는 구조로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01~504동 저층부 5개층에 설치되는 건강계단은 주동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과 별도로 설치되는 주민공동 시설물이며 주동의 위치에 따라 구조가 상이할 수 있음. • 501~504동 저층부 일부(지하2~지상5층) 및 고층부 일부 엘리베이터홀에는 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풍실이 추가되어 기준층 엘리베이터홀의 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501~504동 지붕층에는 소화펌프가 설치되어 기계장비의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시스템은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일부에는 일부 공용창고가 설치되며, 창고용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시스템이 501~504동은 1개동당 1개소씩 지하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505~512동은 2~4개동당 1개소가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에 근접하여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505~512동 2층 필로티)에 에어컨 및 냉 · 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의 높이는 2.9M임.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아파트 전용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 남측에 아파트/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공용출입구 1개소 등 2개소가 설치되며, 아파트 전용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에는 지붕구조물이 설치되나, 아파트/근린생활시설 공용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소방법 등에 따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 · 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 · 형태 · 색채 ·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투입구 및 재활용집적소,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피로티내 자전거보관소,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투입구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외관, 조명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2-4생활권은 "나릿재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피로티(내외부) 등은 관련 인허가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마감은 고층부는 외부용 실리콘페인트 및 금속재 판넬이 적용되며, 저층부는 금속재 판넬, 테라판넬 및 실리콘 페인트 등이 혼합 적용되며, 주동출입구일부에는 석재가 적용 되므로, 적용부위 및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CG 및 모형, 도면 등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판매/근린생활시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이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통합적 계획된 구조이므로, 일부 단지내 도로, 보도 및 기타 공용시설물은 아파트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판매/근린생활시설(2개층)은 대로변에 연도형으로 위치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510동, 511동 지하층 및 511동, 512동의 1층은 분양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510동, 511동 지하층 및 511동, 512동의 1층의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의 세부 프로그램은 미정이며, 추후 분양예정인 시설로,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용 주차 구획은 지하1층 전용주차장(주차대수143대)이 설치되며, 남측 공동주택 주차장출입구와 일정 구간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은 아파트와는 별도로 구획되는 구조임. • 판매/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창문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은 505동 피로티층에 주민회의실, 506동 피로티층에 관리사무소 및 보육시설, 507동 피로티층에 경로당 및 독서실, 508동 1층에 작은도서관, 509동 510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은 FITNESS, GX, 스크린골프 1개소, 실내골프연습장 및 락커룸, 탈의/샤워실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도서, 책상 등의 집기 · 비품류 등)의 제공 및 내부 인테리어는 분양 홍보물에서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진출입은 509동 피로티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함.
- 505~512동 2층(피로티층)에 분산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다목적실)은 주동 위치에 따라 거리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형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채광 등을 위한 선큰이 2개소(511동, 512동 피로티층)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채광창이 510동 피로티층에 설치됨.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 · 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지상 · 지하주차장
- 주차대수는 총 1,186대가 설치되며, 판매/근린생활시설 주차 143대(지하1층), 공동주택은 1,043대(지하1, 2층)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